

(論 文)

國家技術 資格制度에 관한 研究

—通信 專門職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System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Profession—

趙 鼎 鉉

Jhow, Jeon-Hyeon Ph. D. Prof.

(1979. 12. 25 接受 · Received Dec. 25, 1979.)

<目 次>

I. 序 論	1. 電氣通信의 本質
II. 國家技術資格法	2. 專門職
1. 通信資格制度의 收容	III. 通信資格
2. 法의 目的	1. 通信資格의 正統性
3. 國家技術資格의 構造	2. 通信資格의 類型과 職能
4. 技術資格制度 連營委員會	3. 通信資格의 活用
5. 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	V. 結 言
III. 通信專門職	參考文獻

要 約

電氣通信要員에 對한 資格制度를 統合한 國家技術資格法은 高度產業의 主軸인 專門人力을 持續的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그 教育·訓練의 改善, 資格檢定의 施行 및 資格取得者의 就業와 活用 등 一連의 國家의 施策을 수행함에 必要한 基本法이다.

特히 이 法은 이 法에 의한 檢定을 거쳐 資格을 取得한 者에 對한 就業, 活用 및 優待를 보장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常設審議機關인 資格制度運營委員會를 두는 한편 資格의 種目에 따라 主務部를 指定하고 各該當機關이 受任해야 할 施策 및 所管業務을 義務條項으로 賦課하고 있다.

通信要員에 關한 資格制度는 電氣通信의 屬性인 同時的 相對性, 空間的 不可分性, 重層多分科的 科學性 및 奉仕的 社會公益性에 適應하기 위한 專門人力을 豐出·供給하기 위하여 特定한 職務上의 知識과 技術 및 訓練의 習得을 前提로 國家의 檢定을 통하여 嚴選된 者에게 國家가 職能의 就業資格을 發給附與하는 行政作用이다. 이 制度는 電氣通信의 超領域의 本質에 根據하여 國際的으로 먼저 創始되었고 이 資格 中에는 國際法의 強制를 받아야 하는 한편 世界的 公認과 通用이 許容된 것도 包含되고 있다.

이러한 通信資格의 正統과 固有性은 電氣通信의 發達과 함께 그와 並行, 連綿되고 있어 처음부터 國際條約 및 關係法의 規制對象이 되어 왔다. 이 資格의 강제的 通用職位는 最小限으로 指定되지만 그 以上的 通

* 光云工大教授, 正會員, 韓國通信學會長

이 研究는 本學會가 產學協同財團의 支援을 받아 開催한 1979年度 學術세미나에서 發表한 主題 論文임.

用擴大는 ITU 會員國의 主權에 委任되고 있다. 通例의으로 各 會員國은 그 適用을 擴大深化하는 한편 그 資質의 高度化를 法制화하여 ITU의 理念과 勸告에 따르고 있다. 이와같은 適用擴大와 資質의 高度化를 勸告한 國際法精神은 우리의 國家技術資格法이 그 資格의 活用을 極大化하겠다는 法理念과 相通一致한다.

한편 現行 電氣通信法은 非公衆通信系 人力에 限하여 그 資格을 強制하는 反面 公衆通信系 人力에 對하여는 그 強制를 排除하고 있다. 公衆通信은 公衆에게 通信役務를 有價로 提供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보다 더 高質의 資格에 의한 役務提供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官營의 公衆通信이기 때문에 自體規制가 可能하다는 名分을 내세울 수 있다고 推理되나 궁색한 변명밖에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電波管理法上 전파통신要員 資格은 官·公·私設 또는 公衆·非公衆通信의 區別이 없이 모두 平等한 規制對象이 되어 있고 이러한 規制理念이나 方法은 모두 國際法과 通信科學의 原理에 立脚하고 있음에 對하여 電氣通信法만은 專制主義的 殘滓을 버리지 못한 異端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電氣通信法上 要員資格의 規制를 받는 設置運營되고 있는 官·公·私設局에서 自給自足하는 모든 通信役務가 官營公衆通信의 그것과 同質同類일뿐 아니라 이 官·公·私設局中에는 中央政府에 屬한 官設官營局과 政府直轄을 받고 있는 公設公營局이 多數 包含되어 있다.

結局 모든 電氣通信은 所定의 資格을 取得한 者에 의하여 그 役務가 產生되고 供給되어야 하며 또 그에 관한 業務가 處理되고 取扱되어야 함이 通信科學의 原理이며 國際條約의 法理이다.

이와 같은 資格取得者가 經驗을 蓄積하고 그 資質을 高度化하였다면 電氣通信을 위한 統合的企劃·管理 또는 經營·行政에 起用·活用할 수 있겠고 그 效率性 또한 甚大할 것으로 기대가 可能하다.

이러한 活用 또는 그 極大化的 可能性을 受容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主體는 國家技術資格法上 資格制度運營委員會 또는 該當 主務部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並行하여 資格取得者 自體의 自覺과 奮發을 기초로 한 持續的 資質向上과 誠實한 義務遂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通信科學의 內的深化와 그 外的應用이 擴大되어야 함이 또한 電氣通信에 관한 모든 問題의 起點 또는 論議의 基盤임을 忘却하여서는 아니된다.

끝으로 可能性의 구체화 과정인 資料의 蒐集과 分析, 實際의 調查와 評價, 政策의 論議와 決定, 法案의 起草와 立法 또는 그 行政企劃과 施行 등 諸段階는 電氣通信의 本質과 通信科學의 原理에 根源을 둔 官·產協同의 精神 또는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자 한다.

官·產·學協同은 國政과 產業과 學術 및 教育이 同時에 그 集約的 目標를 成就하여 能 수 있고 또 그 將來 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現代的 最新 最善의 戰略이라고 믿기때문이다.

— Abstract —

Including the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inication, the National Law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 a basic law for supply with manpower of high growth industry, and it is aiming at perfect the national Policy Concerned improveme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carrying out of stat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d getting an occupation or application for special qualification.

This law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ROK. and authorized competence Minister according to kind of special qualification aiming at getting employment, practical use and courteous treatment in society and economy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also regulated their each official duty.

A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nication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giving an occupational certificate after some examination for knowledge, technique and faculty in vocational ability to adapt to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is certificate has the cause of an attribution of over the sphere of telecommunication, and so it has been originated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n some of them is forced by international law, otherwise it be in common use between the nations

The Characteristic and orthodox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has been succeeded continually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he applicable field of them is specified, but the

sovereign power of nation is approved by ITU that she can extent the applicable position for communication certificate and coordinate the utility of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valu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excepted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in public communication field. It is unreasonable and even disobeyed agains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n communication certificate have to accept in the public communication field at all, if so, the application field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can have more than useful extension such as administration measure should be achiev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and competence Minister appointed according to special kind of certificate and the administration have to manage by the method and process caused by communication science 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administration, industry,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n, every acquisitor of qualification also has to try to perfect his vocational duty sincerely and to promote each self-realization.

I. 序論

우리나라는 1973年 12月 31日 法律 第2672號로 國家技術資格法을, 1974年 10月 16日 大統領令 第7283號로 同 施行令을, 同年 12月 31日 總理令 第142號로 同 施行細則를 각각 制定公布하고 1975年 1月 1日을 기하여 그 施行을 개시함으로서 統合된 國家的 技術資格制度를 確立하였다.

이 制度를 確立하기 위한 業務를 主管해 온 政府當局은 이 制度 确立의 背景을 다음과 같이 開明한 바 있음을 想起해볼 必要가 있다.

從來 우리나라에서 施行中이던 各種 資格 또는 免許制度는 관계 部處가 各其 所管하는 法令의 獨特한 目的에 따라 自意의으로 制定하였거나 先進國의 制度를 無批判의으로 導入模倣한 傾向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國家的 次元에서 보았을 때, 資格標準의 不均衡, 一考多取의 重複, 取得者에 대한 우대조치의 未洽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를 制度는 產業社會의 要請에도 充分히 對應해 나가지 못한 脆弱點이 없지 않았고, 또 19餘個法令에 의한 26餘種의 多樣한 免許制度가 10餘所管部處의 主觀에 의하여 各其 個別의으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國家的觀點에서의 統一된 規制乃至 的長이 不可能하였다¹⁾는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產業社會의 主軸인 專門人力의 類型을 最高頭腦로서 科學者, 現場幹部로서 技術者 및

現業實務者인 技能上로 階層의 區分을 行하고 正規教育에 있어서의 大學院卒, 專大 以上卒 및 高卒의 學力所持者와 同等한 社會經濟的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誘導함으로써 產業人力에 對한 前近代的 고질 乃至 偏見을 拂拭하고 產業의 高度化에迎合하기 위한 國家技術資格制度를 定立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結局 國家技術資格制度의 理念을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所定의 資格을 取得한 자는 前記한 學力所持者와 各各 同等한 社會·經濟的 待遇를 받을 수 있는 法的保障과 行政支援을 強行하겠다는 것이다.

電氣通信 分野는 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조선·항공·토목·건축·섬유·광업 및 기타 산업과 密接한 관련이 있는 것 등 19個 技術分野와 기계·금속 등 12個 技能分野와 함께 統合됨으로써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規制對象²⁾이 된 것이다.

電氣通信界는 그 開拓當時부터 要員에 對한 公認資格制度를 採擇하고 그 專門의 科學性과 公益性을 지키어온 차격제도의 本源이다. 특히 近代通信을 觸發해온 無線通信에서의 人力의 對하려는 하나의 空間을 共用하는 그 作用의 不可不離性 때문에 世界的으로 共通된 類型의 職能을 強要해 왔는데 이 職能은 就業前에 갖추어야 하며 國際的 資格으로 公認된것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와같이 無線通信은 國際的으로 共用되는 超領域의 就業前 資格을 必須要件으로 하였으며 國際條約은 이 要件의 구비를 強制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李朝末 전기 통신이 도입되면서부터

1) 安英模外 1人, 國家技術資格便覽, 教學社, 서울, 1975, pp.9-10.

2) 國家技術資格法 第2條, 同施行令 第2條.

그 候補要員에 對한 一定한 知識과 기술을 구비케 하기 위하여 電務學徒規則(1900年)을 制定 實施하는 등 國家的 措置가 뒤따랐고, 現代의 자격제도는 1931年 무선통신사자격검정규칙을 制定 實施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日政時代 8·15를 거쳐 1961年에 이르기까지 이 制度를 踏襲해 오다가 때마침 전기통신관계 法令의 改革政策이 强行됨에 따라 近代의 자격제도를 確立하게 된 것이다. 이 近代의 자격제도는 國際的 參與와 世界的 共存을 指向하는 한편 우리의 實情에도 適應해 나갈 수 있는 科學性과 合理性를 갖추고 있었지만 1975年 國家技術資格法의 實施와 함께 資格制度의 統合을 위한 國家施策에 順應, 그 안에 드러가게 된 것이다.

資格制度란 要約하면 特定한 산업의 專門人力을 確保・助長하기 위하여 國家가 特定한 知識이나 기술 또는 能力を前提로 法律에 의한 檢定課程을 거쳐 特定人에게 就業에 必要한 職能資格을 公認與하고 그 事後管理를 持續하는 公行政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行政에는 檢定을 中心으로 教育・訓練이라는 檢定以前의 사전과정과 就業・活用・助長이라는 檢定 以後의 後續課題가 連續되지 않을 수 없으며 橫의으로는 有關法令과 隣接行政 사이의 提携乃至接近이 必然의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本研究는 國家技術資格法을 中心으로 이 制度를 통하여 莳出된 通信에 관한 資格取得者的 活用을 擴大하고 資格을 얻어 特定分科에 就業한 후 一定한 經歷을 蕩積한 자가 全般的 通信을 위하여 그 知識과 經驗을 再投入함으로써 高度의 社會奉仕를持續할 수 있는 活用領域을 追跡 그 實現을 追究해 보기 위하여

1. 國家技術資格法을 大前提로 通信資格에 관한 關係條項을 分析함으로써 그에 담겨진 法理와 實際를 比較検討하고

2. 通信의 本質에迎合하여 莳出되는 通信資格取得者가 그 職能을 통하여 就業과 奉仕가 固定되어 있는 傳統的 職位以外에 그 知識과 經驗을 통하여 高度의 活用이 可能하다고 보이는 專門的 職位를 관계산업 및 行政에서 檢出・追跡해 보고

3. 活用擴大가 可能하다고 想定한 專門職位에 通信資格을 投入할 수 있다는 것을 確證하기 위하여 通信資格의 形成 과정과 그 國內外의 法統을 究明한 다음 通信資格이 含有한 知識과 기술의 屬性에 따라 다시 下分類된 種目에 適合한 職能을 檢出, 앞서 想定한 專門職位에의 充用이 可能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4. 끝으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設置되는 資格制度 運營委員會의 活性화와 이 法에서 指定되는 主務部 行政의合理的改善 및 強化를 통하여 公務員法의 改正 등 그 구현을 促求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研究는 通信資格을 中心한 諸法令 및 畫界行政의合理화를 통하여 成就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電氣通信을 위한 官・產・學協同을 誘發, 그 造成을 促求함으로써 國家技術資格法의 理念과 目的에 接近해 보고자 한다.

II. 國家技術資格法

通信職에 對한 資格制度를 吸收한 國家技術資格法은 本文 17個條款과 附則 2個條款로 形成되어 있다.

1. 通信資格制度의 收容

通信에 관한 資格制度가 이 法에서 獨立된 固有의 分野로 收容되는 과정에서 看過할 수 없는 몇段階의 陣痛이 潛伏되어 있었다는 事實과 그 후 이루어진 後續事項中 特記할만한 것을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立法草案에서 「通信」이 그 屬性의 1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類似分野에 從屬 또는 併存(병탄)되어 있었던 것을 S長官의 明哲한 通信觀에 立脚한 通信分野의 獨立主張이 收容되어 現行 规定과 같이 獨立系列를 占據하게 된 것이다. 即 個體가 全體를 예속시키려 한 不純한企圖가 防止된 것이다. 둘째는 法에 根據한 大統領令案 起草과정에서 또한 「通信」을 그 局部에 不過한 分科에서 謙屬 혹은 가형화해 버리려는 試圖가 되풀이되었지만 法理에 밝은 科技處當局과 通信의 正統 및 自主性에 투철한 關與有志에 의하여 그 不當하고 無知한 脫通信觀이 阻止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立法 또는 起草과정에서 「通信」을 主管하는當局의 姿勢가 너무 消極的 혹은 傍觀的인 것으로 보였지만 通信學界 또는 通信業界에서 이것을 補完, 그 代行을 成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 法의 施行이 本格화된 1977年 10月 韓國技術檢定公團에서 結成된 檢定審議委員會에 韓國通信學會가 通信分野를 代表하여 19個關係學會와 함께 當然職 審議委員으로 委嘱을 받았고, 7個企業體代表와 2個政府代表가 合席한 모임에서 「通信」에 관한 문제를 協議할 수 있는 主體的地位를 占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通信資格」의 學問의 基盤이 되는 通信科學을 研究, 教育하는 韓國通信學會가 1979年 2月 全國의 科學과 技術을

左之右之하는 100餘個 學術團體의 總本山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團體會員으로 公認을 받아 그 正會員으로 加入, 通信科學이 周邊의 科學技術과 提携, 共存共榮할 수 있는 발판을 構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陣痛과 受忍을 강요한 要因은 通信科學을 基底로 하여야 하는 「通信資格」에 對한 學術과 研究가 内部的으로 未熟하였음으로 因한 自覺과 信念의 缺乏으로 말미아마 憨意의으로 造成된 通信圈外에서의 理解와 認識이 脫通信的 或은 沒通信의으로 積滯 되었거나 그 本質이 退步하고 있었다는 證據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든 通信問題를 國家的 次元에서 總括, 統治해 주어야 할 通信政策이나 通信行政이 그 本分을 離脫했거나 弱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前記한 後續措置를 躬行한 學界나 業界는 國家技術資格法이 施行된 것을 機會삼아, 從來 우리가 孕胎(임대)하고 있던 여러가지 自家撞着과 衰退一路에 있는 信念의 減衰 또는 主體性의 崩壞로 因한 追從性의 蔓延 등 根本的始源을 脫皮해 보고자 한 力行의 一片인 것이다. 通信科學에 對한 學術外의 疎外와 通信資格의 本質外의 偏在 및 그 内外에 潛在한 無知와 偏見을 袋어나, 그 科學의 學術의 本質의 專門性을 뇌찾아, 國家의 科學 또는 國際的 資格으로 定着시켜 보자는 一念과 活動의 한 단계였던 것이다.

國家技術資格法中 이 研究와 관련되는 條項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2. 法의 目的

이 法은 이 法에 의한 資格取得者를 國家的으로 優待하고 法的으로 그 優待를 保障하겠다는 理念下에 이 法은 技術資格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適正한 자격제도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자질 및 社會의 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 奇與함을 目的한다고 明示하였다.

이 目的은 첫째, 기술과 기능의 수준에 對하여 統一的 評價制度를 確立, 그 資格取得者的 資質을 向上시킴으로써 그 社會의 公信力を 提高하고 둘째, 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措置를 擴大함으로써 그 社會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그 活用을 極大화하며 셋째, 技術資格制度의 確立와 強化를 통하여 關係되는 教育과 訓練을 產業의 要請에 適應할 수 있도록 改善發展시키고 넷째,

既存한 各種 資格制度를合理的인 기준에 따라 整備·體系化하는 등 그 管理와 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窮極的으로 우수한 人力을 確保하고 그 活用을 極大化하여 國家發展을 위한 產業高度화에 人力的側面에서의 寄與를 增大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3. 國家技術資格의 構造

이 法에서 規定한 技術資格의 構造는 그 規制對象, 資格의 等級과 기준 및 資格의 種目과 名稱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規制對象—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通信·조선·항공·토목·건축·섬유·광업·정보처리·에너지·국토개발·해양·안전관리·생산관리 및 산업응용의 19個 分野가 이 法의 規制對象이 되고 있다.

通信이 他에의 從屬을 排除하고固有의 分野로 定着된 經緯는前述한 바이지만 通信에 관한 科學의 屬性 또는 職務의 性格上 또는 情報化社會의 主軸으로서 通信機能이 無限하게 擴大되고 있다는 展望을 蘫察한다면 정보처리 分野가 通信에서 分離되고 있다는 點은 合理性을 缺한 側面에 罷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統合 또는 別居는 앞으로의 研究課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保健·醫療·航海·農水產業의 耘培·養殖 등 分野가 科學技術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不拘하고 이 法의 規制對象에서 除外되어 있다는 點은, 앞으로의 課題로 留保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法律·會計·經營管理等 社會系 分野가 이 規制에서 除外된 것은 當爲의이다.

둘째, 자격의 等級과 기준—자격은 技術系와 技能系로 兩分하고 다시 技術系는 技術士·技師 1級 및 技師 2級으로 3等級화하며 技能系는 技能長·技能上 1級·技能上 2級 및 技能士補로 4等級化 되어 있다.

기술士는 該當 分野에 대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計劃·研究·設計·分析·試驗·運營·施工·評價 또는 이에 관한 下位職을 지도·監理할 수 있는 能力者를 말하며 學力上으로는 大學院 以上的 頭腦人力을 말한다.

技師 1級은 該當 分野에 관한 大學 4年課程 以上的 基礎知識과 應用能力를 가진 現場幹部人力을 뜻한다.

技師 2級은 該當 分野의 初大課程 以上的 基礎知識과 應用能力를 가진 자이다.

技能長은 該當 分野의 最上級 熟練技能을 가지고 作

3) 安英模外 1人, 前揭書, pp. 11-60.

業管理 및 現場監督을 行할 수 있는 能力者로서 獨逸의 마이스터(Meister) 제도를 導入한 最高技能人力이다.

技能士 1級은 該當 分野에서 上級熟練技能을 가지고 應用·제작·제도·조작·보수·정비·採取·検査 및 이에 관한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人力이다.

技能士 2級은 해당 分野에서 中級熟練技能을 가지고 기능사 1級에 뒤따른 제작·제도·조작·운전·보수·정비 등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高卒 程度의 技能 人力이다.

技能上補는 該當分野에서 下級技能을 가지고 上位技能上業務을 補助하거나 그 指揮監督下에 제반 기능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中卒程度의 기능 人力이다.

이와 같은 能力의 等級 또는 知識 階層이 技術資格과 檢定基準의 標準이 되는 것이다.

셋째, 資格의 種目과 名稱—주어진 技術分野와 차별의 基本性格에 따라 技術系는 通信·기계 등 19個分野에서 近 200個의 技術士·技師 1級·技師 2級의 資格種目이 設定되어 있고 技能系에서는 通信·금속 등 12個分野에서 500餘의 技能長·技能上 1級·技能士 2級·技能上補의 資格種目이 設定되어 總 700餘個의 資格이 規制되고 있다.

이 資格種目에 대한 呼稱은 分野技術士(種目), 種目技師 1級, 種目技師 2級, 種目技能長, 種目技能上 1級 등으로 呼稱한다.

4. 技術資格制度 運營委員會

첫째, 主務部長官의 權限과 責任—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取得者는 主務部長官이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에 合格한 者라야 하고 또 그 主務部處에 登錄하여야 한다(法 4.8)라는 法的根據에 의하여 各 主務部長官은 所管 資格種目에 對한 登錄管理와 活用에 관한 權限과 責任을 맡고 있다(令 28).

둘째, 技術資格制度 運營委員會의 構成—國家技術資格制度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심의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에 技術資格制度 運營委員會를 둔다고 前提하고 科學技術處次官을 委員長으로 行政調整室·文教部·遞信部·總務處·科學技術處·電波管理局 등 15個政府機關長이 指名하는 2級以上 公務員의 代表와 科學技術處長官이 委嘱하는 學識와 經驗이 豐富한 在野人士 4名이 資格制度에 對한 運營委員會를 構成하게 되어 있다(令 20, 22).

셋째, 運營委員會의 機能—運營委員會는 受檢義務의

對象이 되는 教育機關의 學科 및 教科課程의 指定, 資格種目別 試験科目的 調整, 資格取得者의 優待措置의 講究, 資格檢定制度의 發展 및 기타 資格制度에 관계되는 사항에 對하여 審議하고 建議하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法的 자문기관으로서, 또는 各種 資格種目을 主管하는 關係部處間의 協議體로서 機能을 한다(法 21).

넷째, 專門委員會—運營委員會에는 19個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두는데 各 該當分野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中 委員長이 委嘱하는 5名 以內의 專門委員으로 構成하고 各 該當分野의 檢定에 關한 專門的事項을 研究調査하는 活動을 行한다.

5. 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

첫째 本法上 優待一本法은 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를 宣言하고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資格取得者의 經濟的·社會的地位의 適正한 疊지와 그 就業 및 身分의 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法 10)고 規定하고 이 條項에 立脚하여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그 技術系 또는 技能系의 公務員이나 職員을 採用할 때에는 該當 資格取得者를 우선적으로 任用하여야 하며 그 公務員이나 職員에 對하여는 關係法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報酬·昇進·轉補·身分保障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令 31). 또 主務部長官은 그 所管下에 있는 企業體 또는 團體에 對하여 技術系 또는 技能系의 職員을 採用할 때에는 該當 資格取得者에게 우선權을 주도록 勸告하여야 한다(令 31). 그러나 政府自治團體는 不論 그 管下에 있는 政府投資機關·企業體·團體는 資格取得者의 就業·身分·報酬에 對하여 格別한 優待措置를 促進 奬獎하여야 하는 法的 義務가 賦課되고 있는 것이다.

또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本法上 技術分野에 關聯되는 営業을 許可·認可하거나 權利의 設定 기타 利益을 賦與하는 경우에는 當該 資格取得者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하는데 이 때의 기타 利益은 技術研修를 위한 海外派遣·金融上の 支援·獎勵金의 支給을 의미한다(法 10, 令 32).

위와 같은 優待條項은 宣言的이고 包括的이기 때문에 이에 相應한 法的 또는 行政的 後續措置가 뒤따르지 않으면 구체적 施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優待條項은 資格取得者에 對하여 政府등 關係機關이 優待를 取할 수 있는 法的義務를 提示해 주는 한편 보다 積極的인 行政權의 發動을 促求하

고 있다고 보아 그 優待可能性과 展望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法令에 의한 優待—먼저 公務員法上 優待를 지적할 수 있다. 國家技術資格法上 資格取得者의 資格種目과 相通한 公務員法上 特定職種에 該當한 公務員을 任用함에 있어서 特採 또는 轉職試驗에 應試하는 경우 資格取得者は 一定한 實務經歷을前提로 그 試驗의 全部 또는一部를 免除받을 수 있다. 이 때 公務員은 一般職, 技能職, 研究職 및 技術職을 包括한 意味이다.

셋째, 兵役法上 特典—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上 軍需業體 및 研究機關에 從事하는 職種이 資格取得者의 種目과 同一한 경우 그 資格取得者は 补充役에 編入될 수 있고 基幹產業體 選定委員會에서 選定한 業體의 職種이 資格取得者의 技術種目과 同一한 때에는 그 資格取得者は 补充役에 編入될 수 있다(兵役義務의 特別規制에 관한 法律 및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

넷째, 同種·同等한 法令上의 特典—技術資格取得者는 그 資格과 同種·同等한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取得者와 同等한 待遇를 받는다. 國家技術資格法 制定以前提에 다른 法令에서 規制한 資格의 性格이 이 資格法上 資格種目과 同種·同等인 때에는 從來 法令에 의한 免許 또는 資格에 對하여 既得權을 제승 認定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電氣事業法上 電氣業體는 電氣技師의 資格을 取得한 者를 保安擔當者로 選任하여야 한하고 規定함으로써 電氣業職은 就業前 資格의 取得을 強制 받고 있었기 때문에 結局 資格取得者的 就業機會가 保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의 特典—國家技術資格制度上 理念과 實利를 理解한 該當 民間業體 또는 個人은 法의 強制圈外에 있다. 할지라도 資格取得者를 우선 採用·報酬·優待 등 그 活用을 擴大할 수 있다.

여섯째, 資格取得者の 誠實義務—多様한 特典이 주어지고 있는 資格取得者는 誠實히 그 職務를 違行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損傷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規定(法11)하고 人道的 誠意 및 民法上 善良의 義務를 促求한다.

III. 通信專門職

이 研究에서 通信專門職이란 通信科學의 原理와 本質에 立脚하여 形成되거나 造成되는 產業, 行政, 教育

기타 이 科學을 기초로 하는 모든 職位 또는 職域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特히 行政學上 職位分類制에 의한 모든 職位의 概念을 内包한 것으로 看做한다⁴⁾.

따라서 通信專門職은 從來 各種 通信局의 主體로서의 通信職位는勿論 公務員任用令上 通信에 관한 職群職列 및 職級에 의한 모든 구체적 職位와 잠재적이지만 實質적인 通信職位 및 非政府機關에서의 通信에 관한 專門的 職位를 一括한 意味가 된다.

아울러 이러한 專門的 職位에 任用되거나 就業할 수 있는자는 事前에 그 職位에 適應할 수 있는 專門의 知識, 技術 및 能力を 구비하여야 하는 條件이 賦課된다는 假設이 成立될 수 있다.

이러한 假設을前提로 電氣通信의 本質과 通信科學의 原理 및 專門職의 屬性을 究明함으로써 前記한 假設에의 接近을 試圖해 보기로 하겠다.

1. 電氣通信의 本質

通信이 무엇이며 電氣通信이 무엇을 하는 무엇이냐를 새롭 言及한다는 것 自體가 原初의이므로 幼稚하다고 자회하면서도 敢히 그 基本의 原理와 더불어 그 本質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研究의 接近이 不可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概要를 다시 前提하지 않음은 수없다.

通信은 意思의 流通作用이며 電氣通信은 電氣에 의한 情報의 流通過程이며 各種 情報가 電流나 電波에 塔載되어 授受되는 社會의 交互現象이다.

通信과 電氣通信은 누구나 利用할 수 있지만 누구나 取扱할 수는 없다.

샤논(Shannon, C.E)과 웨버(Weaver, W.)에 의하면 電氣通信은 一定한 過程分析을 要하는 科學이라고 하였으며 라스웰(Lasswell, H.D.)에 의하면 通信問題는 누가 무엇을 어느 通路로 누구에게 무엇때문에(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 授受하는가를 追究하는 것이라고 斷定하였고 슈람(Schramm, W.)은 通信은 社會의 基本的 過程이며 社會의 紐帶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사피아(Sapir, E)는 通信 process를 2分하여 1次的 process인 文化的側面과 2次的 Technique로 나누어 1次的 process의 기능을 重視, 그것은 社會文化的 過程과複合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主張은 그 후 通信科學을 研究하는 基礎理論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通信原理에 基礎한 윈너(Winner, N.)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4) 金圭定, 新行政學論, 法文社, 서울, 1978, pp.300-361.

는 通信科學의 重層多分科性을 立證하였고 루슈(Reusch, J.)와 베이트슨(Bateson)은 이 Cybernetics 이론을 再導入 通信過程論의 深化에 適用하였다⁵⁾.

이러한 각 理論은 國際電氣通信協約에서 定義된 電氣通信의 語義 속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集約되고 있다.

電氣通信은 有線·無線·光線 또는 기타 電氣磁氣的方法에 의한 모든 種類의 記號·信號·文言·影像·音響 또는 情報의 모든 傳送·發射 또는 受信이다(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⁶⁾.

이 定義는 세 가지 原理를 含蓄하고 있다. 即 電氣通信은 通信의 客體인 各種 情報가 通信의 媒體인 電流 등에 塔載되어 通信主體인 人間의 意圖에 따라 授受되는 作用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構成原理로서 人文科學의 要素인 各種 情報가 工學의 要素인 電流 등에 의하여 社會科學의 屬性인 傳送 등 社會作用을 行하는 過程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電氣通信現象은 人文學, 工學 및 社會學의 各分科의 要素가 有機的으로 結合된 重層多分科의 通信科學의 產品인 것이다. 둘째, 電氣通信의 本質은 위의 3要素에 의하여 生成되는 情報의 流通 그 自體이며 그 기능은 社會의 細帶 또는 一體化이다. 이 기능은 社會를 先導, 誘發, 教育 或은 調整하는 Power나 factor로 價值化한다. 이것은 通信機能原理라고 볼 수 있는 데 이 機能은 다른 社會機能 即 政治·經濟 등에 從屬되는 것이 아니고 相互 密着은 하지만 相互 補完의 또는 相乘的 衡平上에서 力動하고 役割하는 것이다. 셋째는 通信의 過程原理로서 情報源(imformation source)에서 나온 通信文(massage)이 送信機(Sender)를 거치는 동안 信號(signal)化된 후 주어진 道路(Channel)를 通過함으로써 受信機(receiver)에 到達되어 다

시 通報(message)로 復元되는 단계를 거쳐 行先(destination)에 到達되는 過程이다⁷⁾. 結局 이 通信過程論은 特定한 通報(message) 即 情報(intelligence)의 行脚過程인 것이다.

이러한 電氣通信은 電報·電話·텔레ックス(Telex)·데이터(Data)通信 또는 專用(appropriate) 등 樣態로 定型화되어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役務의 提供을 組織化하고 側度化하여 商業通信으로서의 企業을 形成·經營하는 것이다.

國家는 이와 같은 通信需要가 效率的으로 國民에게 供給될 수 있는 法的行政的 規制를 行하는 한편 그 發展과 改善를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的 助長과 支援을 持續하고 있다.

이같은 電氣通信에 관한 役務의 提供, 事業과 產業, 經營管理 또는 國家的 行政은 모두 通信資格이 就業할 수 있는 專門職位가 된다고 볼 수 있다. 電氣通信에 관한 모든 職域은 電氣通信의 原理에 立脚한 重層多分科의 現代科學인 專門的 知識과 能力を 必要 要件으로 하기 때문이다.

2. 專門職

通信專門職에 對한 理解를 높기 위하여 專門職에 對한 若干의 追究를 시도해 보겠다.

16世紀頃부터 西洋에서 쓰이기 시작한 專門職이라는 用語는 公衆奉仕를 내세운 職業 또는 集團을 指稱하는 보다 좁은 意味를 나타냈다. 奉仕目的을 가진 職業이 한 理論에 기반을 둔 特定한 知識과 技術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그 知識과 기술은 最高 教育機關에서 長期間 習得되어야 하는 條件이 붙어 있었다. 그 후 專門職이 資格基準의 範圍에 到達해야 하는 條件까지 課하게 되면서는 그 職業集團을 代表하게 됨과 同時に 社會의 身分을 象徵하게 되었다. 西洋에서는 醫師, 牧師, 法官 및 教師가 그 職業의 專門職의 特性을 나타내기 위하

5) 加藤秀俊, *Culture & Communication*, 思索社, 東京, 1971, pp.19—34.

Sapir, E., "Communication in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ed. by E. Seligman, vol. IV. 1931, pp.78—80.
Sapir는 社會形成과 그 成員間의 理解形成에는 Communication過程이 絶對의이며 모든 文化的 pattern, 모든 人間의 社會의 行為는 明示의이나 默示의를 不問하고 Communication을 包含한다고 말하고 實際에 있어서 모든 種類의 人間行動은 Communication으로 考慮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Reusch, J., "values, communication and culture" in "Communication" by Reusch and Bateson, N.Y. 1951, pp.6—15.

모든 行為나 事象은 人間에 의하여 知覺되자 마자 Communication의 側面을 갖게 되며, 환경에서 他人에서 그리고 自體에서 받은 各種印象은 모두 人間의 또는 社會의 Communication system의 構成部分이라고 看做할 수 있다. Reusch는 人間과 人間 또는 人間과 物理的 世界와의 交涉은 모두 Communication이 된다고 보았다. (加藤秀俊, 文化와 通信, 思索社 東京, 1971, p.24.)

6) 1973年 Malaga-Torremolinos 國際電氣通信協約 第2附屬書。

7) 善安善市,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日本放送協會, 東京, 1968, pp.36—38.

여 profession이라는 用語를 붙이게 되었는데 「The medical profession」「the clerical profession」「the legal profession」 또는 「the teaching profession」이 그 예이다. the learned (three) profession이라고 할 때에는 神學, 法學, 醫學을 指稱하여 傳統的 專門職의範疇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專門職은 特定한 分野의 學習된 知識을 要求받는 職業群을 뜻하며 非專門職과 區別되는 의 미를 包含하기도 하고, 正規 教育過程을 통하여 特出한 資質을 習得하고 또 嚴選과정을 거쳐 就業할 수 있는 職種이라고 밑게 되었다.

專門職에 對한 研究를 引用해 보면 세 가지 接近이 시도되고 있다. 첫째는 Flexner와 Lieberman의 評價中心인 特性의 項目化이다. Flexner (1915)의 주장에 의하면 專門職이란 知性的이고 責任性이 강해야 하며 知識은 學習을 통해야 하고 知識內容은 學問의 이라기 보다는 實際의이며 可用技術은 正規教育에 의해야 하고 組織內活動이 能熟해야 하며 社會奉仕의 職業觀이 透徹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Caplow가 提示한 專門化過程 中心의 特性이다. 即 專門職이 組織化되고 專門職의 名稱이 定立되고 專門職特有的 倫理觀이 採擇되어야 하며, 專門職으로서의 社會의 公認取得 및 專門職을 위한 正規教育이 存續되어야 하는 등 5個條件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Johnson이 제시한 專門職 model에 의한 定義이다. Johnson은 專門職의 가장 큰 特性을 社會의 奉仕性에 두고 奉仕者間의 相關性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奉仕의 要求 및 供給源을 기준으로 한 外에 專門職과 權力構造간의 相關性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모형의 特色은 專門性을 中心한 奉仕內容의 分析과 專門職의 가지는 社會奉仕의 價值를 부각시킨 長點이 있으나 專門性의 기준을 제시함에 制限點이 있다는 短點이 있다.

이상 세 가지 接近에서 共通點은 專門職이란 社會奉仕를 中心한 正規教育을 받은자로 구성되며 社會의 公認을 받은 職業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專門職의 核心의 要件은 特定分野에 對한 正規education을 통하여 知識을 習得하고 그 知識은 다시 公認되는 과정을 통하여 嚴選된 者가 任用되어야 하는 職群이라고 볼 수 있다⁸⁾.

結局 通信에 관한 專門職位란 電氣通信에 관한 專門 education을 正規의으로 習得하고 다시 公認된 嚴選(公務員

採用試驗 또는 國家技術資格檢定)과정을 거쳐 就業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격職得者가 就業할 수 있는 모든 職位 또는 그 集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IV. 通信資格

1. 通信資格의 正統性

電氣通信은 그 內的屬性이 綜合科學의이며 그 作用의 本質이 相對的이고 不可分離의이기 때문에 超領域의 廣帶域에서 同時的으로 形成되어야 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電氣通信의 基點인 各局에는 共通된 規範과 같은 基準에 依據한相當水準의 技術的通信設備와 專門的 通信人力이 必須不可缺한 要件이 되고 있다.

이 通信人力은 就業에 앞서 必要한 知識, 기술 및 職能을 習得한 후 所定의 檢定을 거쳐 國家가 發給하는 資格을 賦與받아야 하는 嚴選과정을 通過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專門人力이다.

이 人力에 對한 國家의 資格을 通信資格이라고 말하고 이 制度는 電氣通信 創業과 同時に 創設되어 今日에 이르기까지 世界的으로 繼承이 되고 있다. 資格의 等級에 따라 知識과 職能上格差가 없을 수 없지만 大學程度 以上的 上級資格을 取得한 者는 電氣通信에 관한 實務뿐 아니라 그 管理, 計劃 및 行政을 堪當할 수 있는 充分한 可能性을 구비하고 있다. 또 이들中 資格種目에 따라서는 就業後 經驗을 積蓄함에 따라 專門의 職能과 資質을 高揚할 뿐 아니라 주어진 組織과 기관을 統制하고 調整할 수 있는 一般指導者的 要件을涵養深化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 素質을十分含有하고 있다. 即 專門特殊性 위에 普遍妥當性을 兼有할 수 있는 可能性이 豐富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資格의 要件이 人文·社會 및 工學의 各分科의 要素를 統合한 重層多分科의 現代科學인 通信科學을 大學水準에서 或은 그 以上에서 習得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國際法의 正統과 기준에 依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通信資格의 始源은 電氣通信이 世界的으로 共存하여 야 하는 本質에 根據하여 國際通信條約에서 創始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65年에 創設된 UTU(萬國電信聯合), 1906年에 結成된 IRU(國際無線電信聯合) 그리고 1932年에 UTU

8) 鄭宇鉉, 「專門職과 教育」, 한국교육학회지 Vol. 15 No.3. 한국교육학회, 서울, 1979, pp. 17-18.

와 IRU 가 統合되어 再出發한 ITU(國際電氣通信聯合)가 憲章으로 삼았던 電信, 無線電信 및 電氣通信에 관한 國際條約이 모두 通信人力에 對한 一定水準以上의 技術과 專門性을 必然視하고 그 就業前 구비를 強要, 通信資格에 對한 國際的 法制를 確立해 놓고 있는 것이다.

通信資格에 對한 國際的 象徵이라고 볼 수 있는 無線通信士資格에 對하여 1932年 ITU 條約에 의한 國際規則이 規定한 바에 의하면 同第一級의 要件은 最小限 다음과 같은 職務上의 知識과 技術을 習提하였다는 것이 立證된 者에게 交付되는 國家의 證明書이다. ① 電氣의 一般原理, 無線電信電話의 理論的 知識, 無線測位用기기를 包含한 無線機器의 調整과 運用을 위한 實務的 知識 ② 機器의 運用과 調整用으로 必要한 發電機, 蓄電池 등 附屬機器의 運用理論 및 實用知識 ③ 航行中豫想되는 障碍에 對備한 器具材料로 行하는 必要한 措置에 對한 熟練的 知識 ④ 1分間 20集合의 速度에 의한 曙語 및 25集合의 速度에 의한 普通語의 正確한 傳送과 正確한 受信技法(各 5分間式 試驗함) ⑤ 電話에 의한 正確한 送信과 受信의 技法 ⑥ 無線通信과 그 料金에 必要한 規則의 詳細한 法的適用 知識 및 海上安全과 航空에 관한 通信에 必要한 상세한 法的 知識 ⑦ 世界地理 特히 航路, 航空路 및 電氣信路에 관한 社會學的 知識 ⑧ 國際通信에 恒用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的 國際的 用語에 對한 口頭 및 文書에 의한 充分한 意思表示를 行할 수 있는 言語學的 知識⁹⁾ 등.

이 資格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教育은 8·15前 當時, 舊制 中學(5年間)을 마친 자에게 3年間(專門學校)集中的으로 加해졌다.

1973年 Spain의 마라가 · 토레모리노스(Malaga-Torremolinos)에서 開催되었던 ITU의 全權委員會議에 이어 1974年 Geneva에서 있었던 世界無線通信主管廳會議에서 採擇되고 1976年 1月 1日에 施行된 最新 國際規則¹⁰⁾도 前記한 通信資格의 正統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다. 다만 그 間의 技術發展과 社會要請의 變化에 따라 職務上 知識과 技術의 深化 및 擴大가 不可避하고 또 專門性의 強化가 加重하고 있어 오히려 通信資格의 正統性은 堅固해 가고만 있다. 이러한 趨勢에 對應하기 위한 最近의 우리나라 教育은 大學 4年課

程으로 定立되었으며 그 內實化와 社會發展에 適應하기 위한 研究와 試行이 持續中이다.

1900年을 前後하여 電氣通信을 最大로 活用하기 시작한 英國이나 그 國際條約의 必然性을 提唱하고 그案을起草, 그 締結을 成就한 獨逸이나 또 재빨리 電氣通信을 收容, 그 世界化까지 이룩한 日本이 모두 이 國際的 通信資格을 받아드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正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通信資格을 中心한 法制의 過程을 더듬어 보면 첫째 舊韓國時代(1900)의 電務學徒規則을 들 수 있다. 職務上 專門的 知識과 技術은 漢文 · 國文 · 算術이 能함을 전제로, ①打報法 ②翻譯 ③電理學 ④電報規則 ⑤算術을 科하였다. 이 教科目은 更小限이며 必要에 따라 2.3科目을 增設할 수 있고 入學 年齡은 15-30歲로 하였다¹¹⁾.

둘째 日政時는 1915年의 無線電信法에 의하여 1931年 4月 日本에서 制定施行된 無線通信士資格檢定規則(1931. 4. 1 郵信省令 第8條)을 그대로 導入(1931. 6. 1 府令 第67號) 適用한 것이다¹²⁾. 1級通信士資格에 對하여 職務上 專門的 知識과 技術의 條件이 ①電信電話學理論 ②同조정 · 수리 · 운용상의 實驗 ③電氣通信術 ④通信法規 ⑤交通地理 ⑥英語로 되어 있다.

셋째 8. 15 後 1961年 舊法 整理가 될 때 까지는 無線通信士資格檢定令(1951. 12. 1. 大統領令 第575號)에 의한 다음 科目이 要求되었다. 即 ①內國通信法規 ②外國通信法規 ③無線工學 ④無線實驗 ⑤電氣通信術 ⑥交通地理 ⑦英語 ⑧口頭試問이 그 資格의 要件이다¹³⁾.

넷째, 1962年 電波管理法이 施行되면서 要求된 科目은 大學 4年以上의 ①國內電波法規 ②國際電波法規 ③無線工學 ④無線實驗 ⑤英語 ⑥交通地理 ⑦電氣通信術 ⑧口述試驗인데 그 후 한동안豫備考試와 本考試로 分割, 그 科目이 細分된 때도 있었다¹⁴⁾.

다섯째, 1974年 10月 14日 大統領令 第7277號에 의한 電波管理法施行令 改正에 따른 資格考試科目은 ①國內電波法規 ②國際電波法規 ③通信保安 ④無線工學 ⑤交通地理 ⑥英語 ⑦電氣通信術에 對한 大學 4年以上의 職務上 知識과 技術이 要求되었다¹⁵⁾.

여섯째, 1974年 12月 31日에 公布施行된 國家技術資

9) 1932年 Madrid 國際電氣通信條約附屬 一般無線通信規則 第10條, 日本通信省告示 第4017號(1938. 12. 14)

10) 電波管理局編, 國際無線通信規則, 電波管理局, 서울, 1976, pp. 241-258.

11) 郵信部編, 電氣通信80年史, 同編纂委員會, 서울, 1966, pp. 353-354.

12) 磯崎久鶴, 通信法典電信編上卷, 通信文庫, 東京, 1939, pp. 334-351.

13) 洪順成編, 無線通信法規解說, 學友出版社, 光州, 1952, pp. 177-191.

14) 趙鼎鉉編, 電波關係法規集, 大韓電波協會, 서울, 1963, pp. 119-124.

格法 施行規則에 의한 電波通信技師 第1級(電波管理法에 의한 1級 無線通信士를 改稱함)에 對한 考試科目은 ①電氣磁氣學 ②電子回路 ③無線工學 ④通信英語 ⑤國內電波關係法規 ⑥國際電波關係法規 ⑦交通地理 ⑧通信保安 ⑨無線通信術에 對한 大學 4年 以上的 職務上 知識과 技術이 要求되었다¹⁵⁾.

現行(1979.7.1) 考試科目은 ①電氣磁氣學 ②電子回路 ③無線機器와 無線測定 ④空中線과 電波傳播 ⑤通信英語 ⑥通信保安과 交通地理 ⑦國內外電波關係法規에 對한 筆記와 ⑧無線通信術에 對한 實技인데 大學 4年 以上的 知識과 技術을 要求한다¹⁶⁾.

위에서 提示한 考試科目의 呼稱變化와 그 科目數增減 과정은 主要 通信資格을 主管하는 行政管理上 與件變遷에서 影響을 받아온 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資格에 요구되는 知的·職能的範疇와 深度는 國內外의 으로 一貫相通되어 있다고 보아 通信資格의 正統은 綿綿이어져 왔고 電氣通信의 本質上 앞으로도 繼承되어져야 할 것이다. 通信資格의 正統을 支撐해주는 또 하나의 根據는 누구나 이 資格을 取得한 然後가 아니면 電氣通信 業務에 就業할 수가 없다는 超國家的原理와 이 原則을 수행하기 위하여 各國은 最善의措置를 取해야 한다는 國際條約上 法的規制가 强要되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하여 各國通信主管廳은 通信資格에 對한 多樣한 法的措置를 行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도例外가 아니어서 電波管理法, 電氣通信法 및 國家技術資格法上에 強制 또는 勸告規定을 둘 것은 모두 그려한 原理原則에 따르고 있는 事例이다.

2. 通信資格의 類型과 그 職能

電氣通信에 관한 國際協約 및 國內關係法에서 要求하는 通信人力에 對한 資格制度를 受容한 國家技術資格法上 通信資格은 縱的階層과 橫的類別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縱的階層은 國家的統一等級에 따라 大學院과정의 技師士, 大學과정의 技師1級, 專大과정의 技師2級 및 高校과정의 技能士로 大別할 수 있고 橫的類別은 電氣通信의 科學的本質에 立脚한 固有의 專門의 共同基盤 위에서 國內外의 連關係과 統合科學의 職能을 가진 通信系列과 內在의 分科의 職能을 主로 하는 技

術系列로 兩分할 수 있고 技術系는 다시 傳送媒體의 主成分에 따라 有線系와 無線系로 再區分이 可能하다.

縱的階層化는 教育制度에 따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보이지만 橫的類別은 電氣通信의 本質과 屬性 및 그 内外에 授受되는 相互相補性에 根據하여 判別·把握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即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波通信, 無線設備, 有線通信 및 有線設備의 4種目에는 電氣通信이라는 最小 公倍數(L.C.M)에 의한 同質性과 最大 小約數(G.C.M)에 의한 異質性이 複合되어 있기 때문에 严格한 識別이 쉽지 않고 또 그 知識과 技術의範圍 및 深度에 對하여도 그 分別이 明確하다고 하기보다는 매우 近似한 點이 적지 않다.

大學 4年課程 謂修를 前提한 國家技術資格法上 通信資格의 檢定科目을 기초로 그 知識과 技術에 기초한 職能을 推定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電波通信技師 1級—전기자기학·전자회로·무선기기 및 무선측정·공중선과 電波傳播·國內外電波法規·通信英語·交通地理 및 통신보안에 관한 筆記와 電氣通信技法에 대한 實技

둘째 無線設備技師 1級—전기자기학·전자회로·무선기기·무선측정·공중선과 電波傳播·通信保安 및 電波關係法規에 대한 筆記

셋째 有線設備技師 1級—전자공학·유선통신 공학·전송이론·통신측정·전기통신판제법규에 대한 筆記

以上 諸科目은 專門의 職能이 要求되는 사항이 出題되다고前提되고 있다.

넷째, 有線通信士一大學課程은 아니지만 有線通信技能(印刷 및 音響)가 기초전신공학·통신영어·통신보안·전기통신판제법규에 對한 筆記와 전기통신기법에 對한 實技를 檢定받게 되어 있다¹⁷⁾.

以上 各種目的 資格에 課해지는 檢定科目에 따른 職能을 推定해 보면 ①電波通信技師 1級은 電波通信을 中心한 電氣通信의 屬性인 人文·社會 및 工學을 包括한 重屬多分科의 現代科學인 通信科學全般을 大學水準以上으로 謂修하고 그 實力이 公認되었다고 본다면 電波通信에 관한 事務와 技術등 實務는 勿論 그 組織에 對한 管理行政을 堪當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就業後의 經驗과 研修에 따라 無限한 統合의 可能性을 含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資格種目은 就業의 始點에서

15) 차서육편, 新로운 전파법규, 라디오기술사, 서울, 1974, pp. 54-59.

16) 科學技術處, 國家技術資格法解說, 政府, 서울, 1974, p. 134.

17) 李平求, 「國家技術資格檢定制度와 科目別 出題基準」, 無線從事者協會報 No.24, 한국무선풍사자협회, 서울, 1979, pp. 2-9.

18) 科學技術處, 前揭書, pp. 134-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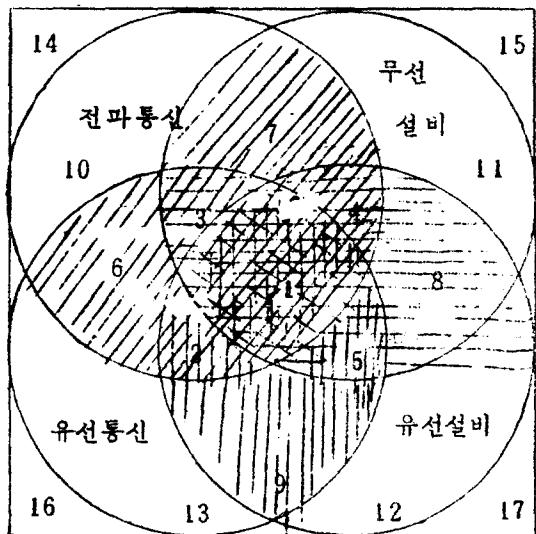
管理技術이나 技術을 選擇한 分科에 따라 그 職能의 深度에 屈曲이 自生될 것이豫測되지만 本質의 으로 이 資格의 特性이 對內外의이며 統合科學의이기 때문에 그 職能은 電氣通信에 관한 專門的 management 나아가서는 統合的行政에도 適應할 수 있다. (2) 無線設備技師 1級은 電氣通信의 屬性中 無線技術을 中心한 工學을 為主로 電波法規와 通信保安에 관한 社會科學의 分科를 添加한 特性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分科에서 그 depth를 더해 가기만 하면 技術者로서의 無限한 可能性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職能은 無線設備의 技術操作과 工事, 그 維持補修 및 設計製作에 까지 擴大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有線設備技師 1級은 電氣通信의 屬性中 有線技術을 中心한 工學을 為主로 通信法規와 通信保安에 관한 社會科學의 素養을 附加한 特性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分科에서 그 depth를 加重함으로써 最高位 技術者가 될 수 있는 可能性이 豐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職能은 電氣通信設備에 對한 操作·工事 維持補修를 비롯하여 그 設計·製作이 可能하다. (4) 雖然 有線通信士의 資格等級이 異例의으로 낮게 格下되어 있지만 그 知的 能力이 或은 技能幅은 그 나름대로 正當하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有線通信士는 印刷級이나 音響級을 莫論하고 電信工學, 通信英語, 通信保安·電氣通信法에 對한 筆記와 通信技法에 對한 實技가 科해진다는 點에서 程度는 알지만 電氣通信의 屬性全般에 걸친 知識과 能力이 그 條件이다. 有線通信士는 이와 같은 資格의 바탕위에서 多樣한 大衆用 情報를 授受·處理 加工하며 有線設備技師가 維持補修한 電氣通信設備를 驅使, 電氣通信에 賦與된 國家社會의 機能을 結實·成就시키는 段階의 職能을 受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線通信士의 職能은 統合의이고 內外의이며, 有線設備技師와 共存協同함으로써 有線通信이 成就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 再認識·再評價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以上 네 資格의 公父母(Common denominator)인 電氣通信의 立場에서 보면 各種目的 資格은 따로따로 分散·離居하는 것이 아니고 各其 屬性中 同質性 위에서 서로 同化하고, 複合性으로 서로 結合하며, 相似性에서 서로 接近하고, 異質性을 서로 相乘相補하는 농도를 深化했을 때 그 資格의 價值가 구현되는 것이며 그 資格의 所任을 통하여 電氣通信이 受任한 國家社會의 또는 公共福祉의 役割을 遂行 增進시킬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온 電氣通信에 관한 各 資格의 屬性

이 同質, 複合, 相似 또는 固有한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는 狀態를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通信資格의 不可不離性>



數字 1은 電氣通信의 本質이며 核이고 通信科學의 原理이다. 4個의 資格이 通信科學의 原理에 立脚하고 그 本質에 立脚했을 때 電氣通信의 本分은 極大化될 수 있다. 그러므로 4個資格의 同質性의 數字 1의 面積이 크면 輸수록 電氣通信은 그 本來의 役割을 最大化할 수 있다.

數字 2는 전파통신·유선통신·유선설비의, 數字 3은 전파통신·무선설비·유선통신의, 數字 4는 전파통신·무선설비·유선설비의, 數字 5는 무선설비·유선설비·유선통신의 각각 複合性이다. 이 複合性이合理的일 때 그 部分의 實效度를 增大할 수 있다.

數字 6은 전파통신과 유선통신의, 數字 7은 전파통신과 무선설비의, 數字 8은 무선설비와 유선설비의, 數字 9는 유선통신과 유선설비의 각각 相似性이다. 이 相似性이 內實化될 때 각 資格은 그 價值를 倍加할 수 있다.

그리고 數字 10.11.12.13은 電波通信·無線設備·有線設備 및 有線通信의 固有한 個性이다. 이 個性은 絶對的이 될 수 없고 다른 資格과 共存했을 때에만 그 存在價值가 있다.

數字 14.15.16 및 17은 전기통신 特有的 專門性 밖의 一般的隣接或은 周邊領域이다. 一般事務나 雜役分野에 該當하는 部分이다.

電氣通信에 관한 職位 또는 職域을 圖示로 둘러싼내

모형으로 보았을 때, 通信資格을 要件으로 하는 專門職이 아닌 職位를 否認하자는 않지만 極히 制限된 別定職 또는 一般職을 受容할 수 있을 뿐이다. 電氣通信에 관한 職業上 知識과 技術을 구비要件으로 하는 通信資格은 그 等級이 얕다 할지라도 電氣通信의 本分을 구현하기 위한 實務遂行에 있어서 또는 그 事業을 管理統制하는 各種 단체에 있어서 通信圈外의 一般 上位職보다 適任이며 實效의이다. 特히 電氣通信에 관한 專大 또는 大學 4年 以上의 正規的 教育課程을 履修한者라고 하면 設令 資格取得 以前이라 할지라도 專門의 職務에 適應할 수 있는 可能性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通信資格의 活用

通信資格을 適用하여야 할은 通信에 관한 國際條約과 關係法上 強制인 同時に 通信科學의 原理이다. 通信資格을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은 國家技術資格法의理念이며 目的인 同時に 通信에 관한 教育과 科學의合理的의 要求이다. 또 이 活用範圍을 擴大하여야 한다는 것은 電氣通信產業과 通信行政의 切迫한 課題이며 通信資格自體의 本質의 方向이다.

서울의 電話加入者가 74萬(79.6)으로 늘어났고 全國電話加入者數가 193萬 2千에 百人當 5.42(77年末)臺로 世界中位(ITU會員國 154個中 75位)에 不過하치만 1人當 年間 通話數는 176 通話로 電話機 保有數에 比하면 그 需要가 世界上位를 占한다. 또 1962年の 電氣通信成長率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76年の 成長率 576은 높은 發展相을 나타낸다. 通信衛星과 海底케이블을 통한 통신정보의 多量化 및 高質化로 우리나라 國際通信利用이 急成長을 하는 과정에 있으며 78年末 對外通信中 電話通話量이 5,415,799 통화에 達하여 지난 10年동안에 年간 39% 成長을 기록하고 있다. 69年 韓美間 通信回線이 6回線에서 96回線이 되었으며 對外通信路 98個가 942個로 늘어났다¹⁹⁾.

通信需要의 急增에 따른 供給의 增大는 通信役務의

擴大量 意味하며 通信利用에 對應한 役務外 供給의 擴大는 通信資格의 活用을 誘發 促進한다고 볼 수 있다.

國力의 伸長과 國民福祉의 向上은 全國民의 科學化(Science for All) 如何에 달렸다고 하는데²⁰⁾ 全國民의 科學化는 全國民의 通信化 또는 全人類의 電氣通信化(Telecommunication for All)²¹⁾에서 出發하여 世界平化와 國民間의 福祉增進에 歸着한다고 볼 수 있다.

全人類의 電氣通信化는 通信資格의 活用化에서 始作된다고 보고 國家技術資格法에 依據한 法理의 따라 그 活用을 위한 試案을 追究 模索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技術資格制度 運營委員會²²⁾의 活性化一科學技術處를 中心으로 각 分野 技術資格을 主管하는 15個政府高官과 기타 人士로 構成되는 이 運營委員會와 그에 屬한 專門委員會를 통하여 ① 技術資格 取得者를 該當한 國家公務員 職位에 優先의으로 受容할 수 있는 公務員法 改正作業을 推進한다. ② 專門委員會가 技術資格을 中心한 官·產·學協同體制로 改編되고 教育·學術, 產業과 文化 및 法令과 行政이 相補相乘하는 積極的이고 協同的인 活動을 展開한다. 教育과 資格과 產業이 그 公約數를 키우는 行政이 꾸 주어야 한다. ③ 該當 主務部는 技術資格을 中心한 人事行政을 開發·持續하고 그 受容과 處遇에 對한 施策을 自體 및 管下에 擴散한다.

둘째, 國家技術資格法上 優待條項의 執行一行政府는 法令을 執行하는 것이 本分이다. 資格取得者의 受容擴大, 社會·濟濟的地位의 確保, 身分과 報酬의 保障, 기타 法的受惠條項을 구체화하는 것이 行政各部가 해야 할 任務이다.

셋째, 國家技術資格法의 理念과 目的의 구현一法에 의한 資格을 取得한 者를 國家의으로 우대하겠다는 理念과 그 管理·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資格者의 資質과 그 社會, 經濟的地位를 向上하겠다는 立法目的을達成하기 위한 뜨거운 点火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도 行政府의 領域이다. 여하간에 國家技術資格法上 주어진 各種의 行政力이 強化되어야 그 實效를 거둘 수 있

19) 東亞日報(79.7.26), 世界의 脈搏(우편·전화) p.4. 韓國統計月報(79.8), 經濟企劃院 p.67.

20) 趙炳夏, 「大學기능 專門化와 創造力量의 滲量」科學과 技術 Vol. 12 No. 8 한우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 1979, pp. 38-35.

21) 世界通信의 聯合體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1865년 5月 17日 paris에서 創始되었는데 1965년 그 100周年을 기하여 5月 17日을 ITU記念日로 定하고 每年 그 날을 記念하는 行事와 더불어 記念標語를 宣布한다. 1979年標語를 「Telecommunication for All」로 定하여 世界에 宣布하는데 「全人類를 위한 電氣通信」이란 多角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기통신의 기능이 全人類를 위하여 最大的 寄與를 하겠다는 意旨을 包含된 것이 틀림없다. 또 이 날을 「World Telecommunication Day」로 表記하고 있다.

22)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第 20-27條.

다.

넷째, 主務部의 役割—主務部長官은 資格檢定을 施行하고 合格者를 登錄하며 그 資格取得者를 管理活用하여야 하는 權限과 責任을 受任하고 있다고 보고 通信資格을 所管하는 主務部에 對하여 기대되는 당면과제는 ① 最新學問으로서 通信科學이 既成學問의 注視 속에 그 核心이 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인식²³⁾ 그 基本原理를 이해한 기반위에서 超企業의 觀點에 立脚한 通信主管廳으로서의 行政體制를 確立하고 우리 나라에서 唯一無二한 通信行政의 主體로서의 地位를 定立한 후 強力한 通信行政을 國家的 次元에서 展開해 나가야 한다. ② 政府 기관中 專門的部處라고 볼 수 있는 法務部, 外務部, 國防部 또는 保社部가 그 專門職이라고 볼 수 있는 次官補以下 각 職位에 法官, 外交官, 軍人 또는 醫藥師를 配置하고 一般職을 排除하는²⁴⁾ 行政學의 原理나 事例를 指摘할 必要조차 없지만 電氣通信分野에 對한 專門性의 놓도는 一言之下에 上記各 分野를 上廻할 뿐 아니라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通信資格의 知識과 技術의 程度 또한 그들과 對等하다. 따라서 通信行政上 모든 職位는 專門人으로 代替되어야 한다 하는 論理가 成立된다. ③ 電氣通信에서 通信設備의 役割이 크지만 그에 뭇지 않게 通信人力 即 專門家의 任務가 끝 아니라 通信設備는 專門家인 사람에 의하여 驅使機能된다고 볼때 사람에 對한 行政比重은 設備以上으로 配慮 되어야 한다. 通信產業이나 通信行政에서 技術의 要素가 重要한 分科를 占有하지만 그 全體가 될 수 없는 限界性을 本質로 하기 때문에 產業과 行政의 統合을 위하여서는相當水準의 技術의 要素에 기초한 위에 形成되는 超技術의 管理行政의 掩護 또는 庇護가 必須의이다. 뿐 만아니라 產業 또는 行政이라는 統合의 完成을 위한 觀點에서는 오히려 必要 最小限의 技術의 要素위에 超技術의으로 形成된 專門家의 行政管理가 그 主體가 되는 것이 行政學 또는 經營學上 原理이다. 그러므로 人力에 對한 政策 또는 行政管理에 있어서는 技術人力 뿐 아니라 超技術의 專門人力인 管理人力이相當한 比重을 차지한 對象으로 採擇되어야 한다. 또 하나, 重要한 것은 國家技術資格法上 通信資格에 對한 知識과 職能의 屬性

및 그 學的 等級에 對한 認識과 評實가 革新되어야 한다. 通信資格을 私設局의 交換員이나 5等 郵遞局의 無資格 通信士程度로 錯覺 偏見하거나 故遠하는 分이 主管廳의 高位職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通信資格이 疏外되거나 歪曲視 當함에 앞서 그러한 無知와 沒識에 의하여 國務나 產業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무섭고 危險한 赤信號가 된다. ④ 通信產業이나 通信行政이 通信科學을 기반으로 形成되거나 發展된다고 볼때, 通信科學의 研究深化와 그 應用擴大는 產業이나 行政以前의 課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通信을 管掌하는 主務部는 國家的 次元에서 이 科學을 中心한 學術, 研究 및 教育에 對하여 格別한 觀心과 支援 및 助長을 促求할 責任이 있다. 警察大學과 稅務大學이 必要하다는 與論은 且 通信大學의 開設이 切迫하다는 促求도 된다고 보며 既存한 大學 및 大學院의 通信行政에 관한 教育을 果敢하게 受容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通信行政은 自主的인 專門的個性을 가졌고 또 國民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世界的 行政이기 때문에 對內外의으로 그 自主的主體性이 擴散浸透되어야 하겠고 넓게 公開되어 衆知를 收容하여야 한다. 通信問題에 관한 限 it 부處나 管下기관을 先導啓發하여야 하며 通信需要家인 國民 特히 斯界 專門家나 學界의 經驗과 知慧 또는 理論을 幅 넓게 芭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通信과 관계되는 兵役法 및 船舶法등 관계법의 立法·改善에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對處해 주어야 한다. ⑥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新規職員을 採用할 때에는 通信資格取得者에게 그 資格에 相應한 優先權 등 特典을 주어야 한다. 79. 8. 24 電信部長官 名義의 4.5級職에 對한 求人 廣告에서 珠算 및 打字資格이 特認되고 있음에 對하여 通信資格에 對하여는 一言 半句의 言及이 없다는 事實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물며 이 對象職列이 所謂 技術職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이러한 國務의 要請이 着想되고 決裁한 후 그 公告가 起案되고 決裁되어 비싼 廣告料를 支拂하고 日刊新聞에 揭載되는 과정에서 通信資格에 對한 發想이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거나 그 資格을 否定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事例가 通信產業과 通信行政을 專管하고 우리 나라 모든 電氣通信을 統轄하며 且 國際通

23) 東亞日報(79.8.3) W.L. Schramm 博士와의 對談, p.3. 우리나라를 訪問한 Communication 穎學 Schramm 教授는 通信科學(Science of Comm.)이 주변 學問의 十字路(Cross Road)를 通過나 모든 科學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言明하고 있다.

24) 政府組織法 第2條.

韓京洙, 「教育行政職의 專門化課題」韓國教育學會誌 Vol. 15. No. 3 韓國教育學會, 서울, 1979, pp.23-25.

信聯合에 對하여 우리 國家를 代表하는 通信主務部에서 起起, 敢行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看過해버리기 어려운 重大事이다. 通信資格 取得者的 活用을 主導하여 야 할 主務部의 處事가 이령다고 보면 그 趨移는 더욱 더 深刻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電氣通信法上 公衆通信系에서 이 制度에 의한 資格을 排除하고 있는不合理가 是正되어야 한다. 公衆通信은 公衆에 對한役提務供이기 때문에 보다 高質인 人力에 의한 奉仕가 바람직하며 設立 官營이기 때문에 自體 規制가 可能하다고 하면 電波管理法上 官·公, 私의 區別이 有する平等原則와 相克되며, 또 非公衆通信系의 國家기관에 속한各種 通信局의 人力에 限하여 資格的 規制를 加한다는 것도 平等原則에 抗역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와 資質 向上一國法의 資格이고 法的 保障을 받게 되어 있는 通信資格을 取得한 者는 諸般特典을 받기 위해 앞서 주어진 資格과 職位에 對하여 誠實하여야 하며 資格의 品位를 損傷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資格取得者는 社會의 要請과 科學의 發展 및 己自實現을 위하여 職能上 技術과 知識을 끊임이 연마하는 한편 善良한 國民으로서 敎養을 向上해 나가면서 周邊社會의 變化와 科學의 要請에 適應하는 努力を 지속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資格의 效用을 增大할 수 있게 되면 그 活用은 自動적으로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資格取得者에 對한 就業範圍의 法制化一現行 國家技術資格法은 資格取得者의 向方을 관계 分野 또는 同種職務 등으로 莫然한 表視을 하고 그 구체적 適用을 行政權에 委任하고 있는 바 각 行政기관의 이에 對한 受容과 適用이 區區할 뿐 아니라 資格取得者에 對한 認識과 이해가 多樣하다. 例를 들면 資格의 適用을 公·私企業에 限하여 適用하고 官業에서는 排除하는가 하면 官·公·私業의 區分없이 一切 適用을 行하는 分野 또는 行政權이 있다. 또 그 統制監督에 있어서 公·私業에는 嚴格하면서 官業에 對하여는 過分하게 寛大한 例도 있다. 그러므로 國家技術資格法은 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統一함에 고칠 것이 아니라, 그 適用에 對하여 最小限의 衡平에 立脚한 基準 또는 범위를 法制할 必要가 있다. 電波管理法上 無線從事者の 從事範圍은 그 先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言

當為法則이며 實定法으로서 法律이 制定·公布되면

그 立法精神에 따라 政府는 이것을 有效하게 執行하는 것이 그 受命事項이다.

國家技術資格法이 制定·公布된 후 檢定業務에 對하는 韓國技術檢定公團을 設置·運營하는 등 積極的인 活動을 做이고 있지만 그 檢定을 通하여 輩出되는 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措置 등에 關하여는 比較的 消極的이 되고 있는 感이 有する.

특히 그 活用에 對한 資格制度 運營委員會나 主務部가 각기 所任에 對한 活動이 公開되지 않아, 斷言하기 어렵지만 그 實效가 極微한 것으로 밖에 認識할 수 없다는 點은 非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通信分野에 對한 資格 檢定 또한 活潑하다. 그러나 그 資格을 取得한 者에 對한 就業 및 活用등에 關하여 이것을 受任하고 主管하여야 할 當局이나 기타 有關機關이 또 어느 정도 資格制度에 對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活動을 하고 있는가, 皮相의 以為는 하지만比較的 冷淡 or 旁觀의 단계에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候補者를 教育하는 1部 人上가 資格取得者의 前途와 進路에 對하여 教育者的 憂慮를 나타내지만 그 힘이 너무도 弱하기 때문에 勞心焦躁에 끝나고 말 뿐이다.

國家技術資格法은 資格取得者에 對한 社會·經濟의 等級을 教育部上 學制에 의한 朴·석·학사 등 學力水準에 對比하면서 그 優待를 保障하겠다는 立法理念을 내세우고 그 구체적 事例를 明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法은 資格檢定과 그 檢定을 거쳐 資格을 取得한 者에 對한 就業·活用·處遇를 法定함과 아울러 檢定以前의 過程인 教育訓練의 改善을 誘導하겠다는 公約을 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한국기술경쟁公단을 통한 檢定業務에 停滯하고 있을 뿐, 기타 法理念의 구현이나 教育改善의 誘導에 對하여는 너무도 미치지 못한 點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筆者は 그 中 하나인 通信資格 取得者에 對한 活用을 增進하기 위한 接近을 시도해 본 것이다.

첫째, 國家技術資格法의理念과目標를 大前提로 資格取得者에 對한 處遇를 위한 法的 根據를 土台로 關切조항을 檢出 分析한 바 科學技術處에 設置된 資格制度 運營委員會와 該當主務部가 이 業務를 主管하되 政府·自治團體 및 그 管下의 모든 기관이 그 優待條項을 履行하여야 할 責任과 義務를 受任하고 있으나 그 實效가 極微함을 確認할 수 있었다.

둘째, 通信資格을 取得한 者가 그 知識과 기술을 기반으로 形成되는 職能에 따라 就業하거나 活用될 수 있

는 通信의 專門職位를 追跡해 본 바 이 資格이 傳統的으로 強要되어 온 通信現場 以外에相當한 數의 公務員法上 通信의 職位가 이 資格을 取得한 者로 하여금 任用될 수 있다고 想定되었다.

셋째, 電氣通信과 그 職務의 國際性·科學性 및 公益性에 適應하기 위하여 形成된 通信資格은 그에 따른 知識과 技術을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始點부터 國內外의 法의 規制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法의 規制의 連續性은 通信資格의 實質의 正統性을 繼承해 来고 또 그 正統을 深化함으로써 오늘날 世界的 資格으로서의 地位를 堅固히 하고 있다. 通信資格의 內的 知性에 따라 다시 類別된 資格種目의 類型 및 職能을 각각 그가 內包한 知識과 技術의 條件에 따라 比較 分析해 본 바, 各 類型이 含有한 知能, 職能은 앞에서 想定한 通信의 專門職位가 必須 要件으로 하는 職務의 專門性과 科學性 및 公益性과 同質의 이거나複合의 인 것이 된다고 判定되었다.

그렇다면 各種 通信資格은 公務員法上 電氣通信의 專門職位에 充用이 可能할뿐 아니라 適合適格이며 人事行政上 適材適所가 된다.

通信資格이 公務員法上 通信의 專門職位에 充用適應이 될 수 있다면 通信主務部의 通信職位 數萬을 비롯하여 기타 各部處 通信職位 및 非政府機關 通信職位가 모두 그러한 해당資格을 채택하는 方向으로 轉移될 것이 分明하므로 애써 釋出한 通信資格의 活用前途는 밝고 밝다고 볼 수 있겠고 萬一 公職의 固有의 條件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補完教育을 加함으로써 足할 것이다.

이러한 活用이 可能하기 위하여는 一次의으는 公務員任用令이 이에 呼應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 作業의 點火는 資格制度 運營委員會와 各 該當 主務部가

맡아야 할 것이며 다음 段階는 同委員會의 一員인 總務處가 法令의 改正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資格取得者의 活用 및 그 범위 擴大는 國家기술자격法上 資格制度運營委員會 및 該當主務部가 이 法에 이미 마련된 法的 根據에 立脚하여 그 活動을 積極化하고 活性化 할 때 기대될 수 있는 重且大한 事業이 된다.

結局 通信資格의 最大活用은 科學技術處內의 資格制度運營委員會가 그 活動을 積極化하는 것과 主務部의 行政이合理化되고 强化되는 한편 資格取得者가 從事할 수 있는 법위를 明示하기 위한 國家技術資格法의一部가 補完됨으로써 그 成就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資格을 取得한 者도 그가 爭取한 資格에 對하여 科學的 自負의 專門家의 信念을 굽게 하는 한편 國際的 職位의 受任者로서의 自覺과 主體性 구현을 위한 奮起을 통하여 自己實現을 위한 研磨를 持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內在的努力이 그 對外的 活用度를 높이는 큰 要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繼續해서 通信資格에 對하여 究明되어야 할 課題을 提示해 보면

- ① 通信資格이 계속 國家技術資格法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 ② 通信資格을 위한 教育과 通信資格을 受容해야 하는 產業과의 接近 및 協同
- ③ 通信科學과 通信資格의 接點擴大
- ④ 通信資格의 活用領域 擴大
- ⑤ 政府機關 通信職位外 通信資格
- ⑥ 通信資格을 中心とする 關係法制의 接近과 合理化
- ⑦ 通信資格의 社會의 地位 定立(國際的, 國家的 및 經濟的 諸側面을 包含함)

參 考 文 獻

1. 編著書

- 安英模外 1人, 國家技術資格便覽, 教學社, 서울, 1975.
- 科學技術處, 國家技術資格法解說, 1974.
- 遞信部, Malaga-Torremolinos 國際電氣通信協約, 1973.
- 電波管理局, 國際無線通信規則, 1976.
- 遞信部, 電氣通信 80年史, 1966.
- 遞信部, 電氣通信關係法令第1輯—第3輯, 1978.
- 趙鼎鉉, 電波關係法規集, 大韓電波協會, 서울, 1963.
- 趙鼎鉉, 國際電波法規論, 實學社, 서울, 1973.

- 趙鼎鉉, 國際電波通信法, 韓國通信學會, 서울, 1977.
趙鼎鉉, 電氣通信法規要論, 電波科學社, 서울, 1967.
洪順成, 無線電信法規解說, 學友出版社, 光州, 1952.
鄭秉權, 電波法規, 大韓法規集刊行會, 서울, 1971.
朝鮮總督府, 遜信法典電信通話編, 遜信局, 京城, 1940.
幾崎久暢, 遜信法典通信文庫, 東京, 1937.

2. 論文 其他

- 趙鼎鉉, 「通信行政의 專門性와 國家公務員法上職群」, 建國大學校行政研究論叢第6輯, 1978.
趙鼎鉉, 「通信과 情報產業」光云工大論文集第6輯, 1977.
趙鼎鉉, 「通信教育과 產學協同」光云工大論文集第7輯, 1978.
趙鼎鉉, 「通信教育의 系列化와 階層化」光云工大論文集第8輯, 1979.
趙鼎鉉, 「電氣通信에 關한 研究」建國大學校大學院論文集第2輯, 1975.
金宗西, 韓國教育學會報, Vol. 15 No. 3, 1979.8.
金聖在, 韓國無線從事者會報, No. 24, 1979.6.
閔寬植, 科學과 技術, Vol. 12, No. 8, 1979.8.
李洛善, 技術人力 Vol. 2, No. 4, 8 1979.8.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金海東, 韓國行政學會報 No. 8 1979.8.